

신구조문대비표

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대통령령 제26299호, 2015.6.1., 제정]	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대통령령 제28629호, 2018.2.9., 일부개정]
제3조(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2.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. 해당 연도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4. (생략) ② 시·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광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③ 시·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④ 시·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, 관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⑤·⑥ (생략)	제3조(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- - - - - - - - - - - - 1. 직전 - - - 2. 연차별 - - - 3. 연차별 - - - - - - 4. (현행과 같음) ② - - 도지사는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③ - - - - -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- - - - - - ④ - - 도지사는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⑤·⑥ (현행과 같음)
제8조(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)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(이하 “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”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1. ~ 5. (생략) 6. 해당 건축자산의 보전 필요사항 7. ~ 9. (생략) ② (생략)	제8조(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) ①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- - - 건축자산의 주요 가치 등 - - - - - - 7. ~ 9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9조(우수건축자산 증축·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) ①·② (생략) ③ 시·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	제9조(우수건축자산 증축·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시·도지사는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 따라 허가

거나,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도·조언 또는 권고 등을 하거나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로서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건축물을 관할하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알려야 한다. <신 설>	의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, 그 결과(불허가 처분의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)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④ 시·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,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도·조언 또는 권고 등을 하거나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로서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건축물을 관할하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알려야 한다.
제12조(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·변경 및 해제 절차) ①·② (생 략) ③ 시·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자산 진흥구역(이하 “건축자산 진흥구역”이라 한다)을 법 제18조에 따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 <신 설>	제12조(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·변경 및 해제 절차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시·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치는 경우 해당 위원회(이하 “공동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기준에 관하여는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0조의7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통합심의위원회”는 “공동심의위원회”로, “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은 “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”으로 본다. ④ 시·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자산 진흥구역(이하 “건축자산 진흥구역”이라 한다)을 법 제18조에 따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제13조(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) (생 략) <신 설> <신 설>	제13조(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) ① (현행과 같음) ② 법 제19조제4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.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4항제3호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할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문화적 가치 및 특성과 그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.
제14조(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) ① ~ ⑤ (생 략) ⑥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관리계획을 확정하려면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⑦·⑧ (생 략)	제14조(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- - - - - 공동심의위원회의 - - - - - . ⑦·⑧ (현행과 같음)
제16조(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) ① 법 제21조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”란	제16조(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) ① -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- - - - -

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. 1. 2. (생략) ② (생략) <신설>	----- ----- 1. 2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”란 9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.
제19조(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) ① 법 제26조에 따른 「건축법」 및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에 대한 특례 적용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 ② (생략)	제19조(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) ① ----- ----- 「건축법」,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및 「민법」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
제23조(기부금품의 접수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제4호의 기부금품(이하 “기부금품”이라 한다)을 받은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다만, 기부자가 익명(匿名)으로 기부하는 등의 사유로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 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 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을 기부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 ④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부금품의 접수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·서류 등을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	제23조(기부금품의 접수 등) ① 시·도지사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시·도지사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③ 시·도지사 ----- ----- ----- ----- ④ 시·도지사 ----- ----- ----- -----